

평창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심사 보고서

1. 심사 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3. 12. 9(화) 평창군수(기획감사실장)
나. 회부일자 : 2003. 12. 19(금)
다. 상정일자 : 제10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3. 12. 22)상정 ·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가. 제안이유

-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가 도입됨에 따라,
- 사회단체의 전진한 육성과 전전재정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사회 단체보조금의 합리적 재원배분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제외대상 선정.(안 제2조)
- 지원계획 공고, 신청, 접수, 심사절차 및 지원범위를 규정.(안 제4조 내지 제6조)

-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내지 제13조)
- 보조받은 사회단체의 보고 및 평가, 운영세칙, 준용규칙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5조 내지 제18조)

4.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태영)

-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가 도입됨에 따라,
-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하여
 -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사회단체간 재정지원의 형평성 논란과 필요에 따라 선심성으로 지원되었던 사회단체 보조사업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 사회단체보조금의 합리적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지원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전전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입니다.
-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 지금까지 단체장에게 주어졌던 지원단체선정에 대한 권한이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에 위임되었다는 점입니다.
 - 이로 인하여, 특히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충분한 사전심의 없이 지원되던 예산이 보다 심도있고 객관적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 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조례의 검토결과,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8조를 보면,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는 지금까지 각종 위원회구성에 있어 관행처럼 이뤄졌던 것으로써 과거 관치행정의 잔재라 할 수 있겠습니다.
- 위원중 호선 등을 통한 민주적인 방법을 통하여 진정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을 선출하여 위원회의 탄력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기타 법령의 형식이나 자구에는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요지	답변요지
○ 위원장에 부군수, 부위원장에 기획감사 실장으로 규정하였는데 특별한 이유는?	○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행정분야의 전문가가 위원장·부위원장일 맡는 것이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함.

5. 심사결과 : 수정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불 임 : 평창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끝.

평창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03년 12월 22일
제 안 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1. 제안이유

- 안 제8조 제1항중 위원장에 부군수, 부위원장에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는 규정은 지금까지 각종 위원회구성에 있어 관행처럼 이뤄졌던 과거 관치행정의 잔재로써 위원회의 탄력성을 위해서라도 개선할 필요성이 있으며
- 또한, 동조 제2항 제1호중 당연직위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낮추어 민간인 위원의 비율을 높여 보다 폭넓은 여론을 수렴하고, 동조 동항 제2호중 지방의회의원의 명수를 표기하여 위원회 구성의 명확성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음.

2. 주요골자

- 안 제8조 제1항중 “위원장은 부군수로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 안 제8조 제2항 제1호중 당연직 위원 “농업기술센타소장, 자치행정과장, 문화관광과장, 환경복지과장, 건설과장, 지역도시과장”을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농업기술센타소장, 문화관광과장, 환경복지과장, 건설과장”으로 변경하고
- 동조 동항 제2호중 “지방의회의원”을 “지방의회의원 2명으로” 수정함.

평창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평창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제1항중 “위원장은 부군수로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농업기술센타소장, 자치행정과장, 문화관광과장, 환경복지과장,
건설과장, 지역도시과장”을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농업기술센타소장,
문화관광과장, 환경복지과장, 건설과장”으로 하며

동조동항제2호중 “지방의회의원”을 “지방의회의원 2명”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원안	수정안
<p>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p> <p>②(생략)</p> <p>1. 당연직 위원 : 농업기술센타소장, 자치행정과장, 문화관광과장, 환경복지과장 건설과장, 지역도시과장</p> <p>2. 위촉직 위원 : 지방의회의원, -----.</p>	<p>8조(위원회의 구성) ①-----</p> <p>-----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p> <p>②(원안과 같음)</p> <p>1. 당연직 의원 : <u>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농업기술센타소장, 문화관광과장, 환경복지과장, 건설과장</u></p> <p>2. 위촉직 위원 : <u>지방의회의원 2명,</u>-----.</p>

평창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령, 조례 및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이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제외대상)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1. 법률,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조례에 지원 근거가 없는 경우
2. 제1호에 의거 지원이 가능하더라도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가 아닌 경우
3. 기타 개인, 기업체, 정당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지원계획, 공고 및 신청) ①군수는 매년 지원대상·지원규모·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보·인터넷·직접 통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②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접수 및 심사) ①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후 기재사항 누락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이를 검토조정한 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범위) ①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회단체의 특성, 관계법령·조례의 지원 근거 및 취지 등을 감안하여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통지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볼일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평창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및 지원제외대상인지 여부
3.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화관광과장, 환경복지과장, 건설과장
2. 위촉직 위원 : 지방의회의원 2명, 민간전문가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의견과 덕망을 갖춘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

③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회의 등)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업무담당주사를 간사로 둔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사회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 등)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완료 또는 종료시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자체평가내용 및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별도계정의 설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 및 평창군재무회계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록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關係法令 拔萃

□ 지방재정법

제14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 (공공기관의 범위등) ①법 제14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기관을 말한다.

②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등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행정자치부)

사회단체보조금의 합리적 재원배분을 위하여 자치단체별 조례에 명시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